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1.

발 의 자 : 김동아 · 박균택 · 정준호
허종식 · 문대림 · 최혁진
조계원 · 허성무 · 김영호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재정법」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,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, 국제·차입금 등 채무상환,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,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,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53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5항 중 “사용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하거나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출연은”을 “출연 및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의 출연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~ ④ (생 략)	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<u>사용</u> 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용하</u> 거나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 다.
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<u>출연</u> 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 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,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 <u>출연 및 제5항에 따른 국</u> 민연금기금에의 <u>출연</u> 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